통제초소 근무요령

□ 발생지역(발생농장 및 인근농장)

○ 응급한 경우를 제외한 차량 진·출입금지

○ 생필품 공급목적 진입차량은 방역관 책임하에 세척·소독 후 진·출입

□ 보호지역(발생농장 중심 3㎞이내)

○ 감수성 가축 수송차량 진·출입금지

○ 정액, 사료, 가축의 분뇨, 건초, 볏집 수송차량 진·출입금지

○ 기타 화물차량과 승합·승용차량은 세척·소독 후 허용

○ 통행자에 대하여는 세척·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고
다른 지역 농장·가축시장 방문금지 당부

□ 경계지역(보호지역 외곽 10㎞이내)

○ 감수성 가축 수송차량 진입금지

○ 경계지역 안의 음식물쓰레기, 가축분뇨를 수거할 목적 차량과
식육운반차량(냉장탑차 등)중 적재함이 빈차량 진입금지

○ 등산,골프,낚시,사냥 등 레저차량 진입금지

○ 농장관리자외의 사람은 가축사육 농장의 방문을 금지할 것을 당부